



# 산학협력단 정관

문서번호	산학협력단 2021 - 015
제정일자	2004. 03. 02.
최종개정일자	2021. 12. 13.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산업교육을 진흥시키고 산학협력을 촉진 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상동, 525번지)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둔다.

제4조(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8. 본 대학내에 설치 운영되는 학교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9.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10.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이행 사항
11. 연구비 관리 및 연구지원
12. 소형건설기계 교육훈련 및 센터 운영
1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 제2장 조직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①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한다.

③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정운영 및 재산상황에 대한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사무)①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하부조직)①산학협력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부조직을 둔다.

1.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지원과를 둔다.

2. 총장이 지정하는 부설연구기관이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12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 · 기부금 · 보조금

3. 사업수익

4. 기타수익금

제13조(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간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6. 이자수입
- 7. 기타 산학협력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4조(지출)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 4. 제1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 6.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 7.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5조(채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 3. 채권의 포기

제16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4장 보칙

제17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해산) ①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 ②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 ③해산 시의 잔여 재산은 당해 대학에 귀속한다.
- ④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공고)①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 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 나. 변경 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 다.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공고 방법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광주일보에 공고한다.

#### 부칙

- 1.(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의 승계한 것으로 본다.